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 1759 2017년 4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4월 6일, 이승로·김동율 의원(찬성자 11명)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7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승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와 전문대는 20명 정원의 소규모로 편성되어 지대장과 반장만으로 충분한 실정이며, 부장을 두는 경 우 대원 수 대비 간부인원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장을 두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조직에 부장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.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○ 본 개정안은, 서울시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중 지역의 용소방대(이하 '지역대'라 함)와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'전문대'라 함)가 그 하부조직을 '반'별 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, 현 행 조례가 '부'별 편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그 보다 하위의 '반'별 편제로 축소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(안 제6조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조직)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	제6조(조직) ①
방대에는 대장· 부대장·부장·반장 또는 대	
원을 둔다.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보	
<u>대장</u> 을 두지 아니한다.	<u>대장, 부장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현재 의용소방대는 상위법령인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6조1)에 따라 시·도별로 설치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8조2) 및 별표5 (붙임 1. 참조)에 따라 "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"를 정하고 있음.
- 여기서, 동법 시행규칙(별표5)을 보면 지역대와 전문대를 포함한 모든 의용소방대는 '부'별 편제로 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,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'지역대와 전문대는 부대

^{1) 「}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6조(조직)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、부대장、부장、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

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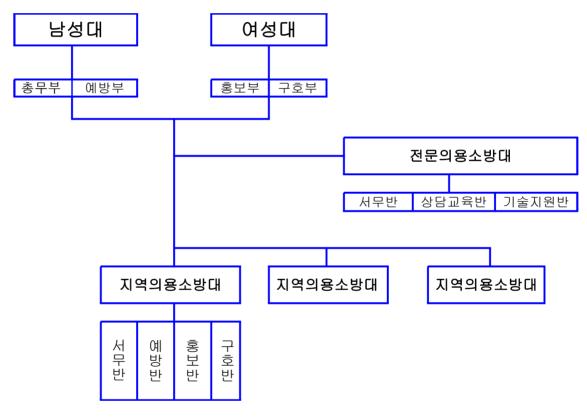
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렁으로 정한다.

^{2) 「}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(조직)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장을 두지 아니한다'라는 '부'별 편제 즉, 부장을 둘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'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'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, 서울시는 이 단서규정에 따라 현재지역대와 전문대에 한 해 '부'별 편제가 아닌 '반'별 편제로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임.



[그림 1] 의용소방대 조직 구성 현황

○ 따라서, 개정안과 같이 지역대와 전문대에는 '부대장' 뿐만 아니라 '부장'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 '부'별 편제에서 '반' 별 편제로 축소되기는 하나 현실과는 부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며,

- 이 역시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상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이고.
- 다만, 현재로서는 소방재난본부가 '부'별 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하부조직을 '부'별 편제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는 본 조례 재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음.
- 결론적으로, 향후 상황이 바뀌어 '부'별 편제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조례가 이를 미리 예측하여 범위를 확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, 본 개정안과 같이 현행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부대장"을 "부대장, 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조직) ① 제2조에 따라 설치	제6조(조직) ①
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· 부대장·	
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 다만	
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<u>부대장</u> 을 두	<u>부대장, 부장</u>
지 아니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